

언러 민권법 (UNRUH CIVIL RIGHTS ACT)에 따라 공공 서비스 및 대우 관련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국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

공정 고용 및 주택국의 임무는 직장, 주택 및 공공 편의시설 내 불법 차별과 증오 폭력 및 인신매매 행위로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주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나 모든 업무용 및 상업 시설에서 공정하며 완전한 서비스, 설비, 권한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용 및 상업 시설이라 함은 다음이 포함되나 그 외에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 호텔 및 모텔
- 병원
- 비영리단체
- 주택
- 식당
- 지방정부
- 영화관
- 및 공공기관
- 이용원 및
- 상가
- 미용실

혐오 범죄

랄프 민권법(Ralph Civil Rights Act)은 개인 또는 소유물에 대해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국적, 연령, 결혼 여부, 건강 상태, 유전적 정보, 장애, 육체적/사회적 성별, 사회적 성 정체성, 사회적 성 표현, 성적 성향, 정치적 관계, 또는 노동 쟁의 입장에 기반한 폭력 행위 또는 위협을 금지합니다.

인신매매

인신매매는 형사 범죄일뿐 아니라 민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 AB 1684 (Stone) 및 캘리포니아 민법 § 52.5 캘리포니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DFEH는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된 접수, 조사, 조정, 중재, 기소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고발 접수

차별, 인신매매, 혐오 범죄의 피해를 입었거나 그렇다고 생각되면 아래와 같이 DFEH에 고발하십시오. 채용과 관련된 피해의 경우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고발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최종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발해 주십시오. DFEH는 불치병 환자의 고발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약속을 잡으시려면, 아래 커뮤니케이션 센터로 연락하십시오.

합당한 편이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DFEH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711)를 통해 접수 내용을 문자로 전환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아래 연락처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수신자 부담: (800) 884-1684

TTY: (800) 700-2320

contact.center@dfeh.ca.gov

www.dfeh.ca.gov

차별은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민권

공정 고용 및 주택국(DFEH)은 직장, 주택 및 공공 편의시설 내 불법 차별과 증오 폭력 및 인신매매 행위로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주민을 보호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을 시행합니다. 또한 이 법은 출산휴가, 가족휴가, 개인적 치료 목적의 휴가를 보장합니다. 그 외에도 DFEH는 혐오 범죄 또는 그러한 위협과 인신매매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DFEH는 다음과 같이 법을 집행합니다.

캘리포니아 DFEH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법을 집행합니다.

1. 괴롭힘, 차별, 휴가 거부 등에 대한 신고를 조사합니다.
2. 신고 건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원만히 해당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위법 행위를 기소합니다.
4.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괴롭힘 및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관한 서면 자료를 제공하고 세미나 및 회의를 실시합니다.

차별은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구나 보호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은 다음을 바탕으로 한 괴롭힘과 차별을 금지합니다:

- 인종(모질 및 보호용 헤어스타일 포함)
- 피부색
- 종교(종교적 복장 및 단장 관행 포함)
- 육체적/사회적 성별(임신, 출산, 모유 수유 및/또는 관련 건강 상태 포함)
- 성 정체성, 성별 표현
- 성적 지향
- 결혼 상태
- 건강 상태(유전적 특성, 암 또는 암 병력)
- 군 복무 또는 퇴역 상태
- 원 국적(언어 사용 및 미국 내 소재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연방법에 따른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포함)
- 혈통
- 장애(지적 및 신체, HIV/AIDS, 암, 유전적 특성 포함)
- 유전적 정보
- 가족 돌봄 휴가 신청
- 심각한 질병 치료를 위한 휴가 신청
- 임신 장애 휴가(PDL) 신청
- 세금 보조를 받는 기관 내 환자 학대 신고에 대한 보복의 건
- 연령(40세 초과)
- 범죄 경력(공정기회법(Fair Chance Act))

차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별은 다음을 포함하나 그 외에도 다양한 고용 과정에서 금지됩니다.

1. 채용 공고
2. 지원, 선별, 면접
3. 채용, 이직, 승진, 해고, 직원 분리 등
4. 업무 환경
5. 교육 또는 견습 프로그램, 임직원 단체, 노동조합 등에 대한 참여

차별은 다음을 포함하나 그 외에도 다양한 주택 제공 관련 업무 과정에서 금지됩니다.

6. 주택 공고
7. 담보대출 및 보험
8. 신청 및 선정
9. 괴롭힘을 받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여 입주 조건 및 입주자 권한
10. 제한적 계약을 포함한 공유지 및 사유지 사용

장애인들은 모든 주택 관련 규칙, 정책, 관행, 서비스에서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택을 온전히 활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개축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 차별 금지법과 같이 모든 이들은 사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또한 FEHA는 다음을 바탕으로 한 주택 임대 및 매도 상황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 인종
- 피부색
- 종교
- 육체적 성별
- 사회적 성별
- 성 정체성/성별 표현
- 혈통
- 성적 지향
- 결혼 상태
- 소득원
- 유전적 정보
- 원 국적(언어 사용 제한 포함)
- 가족 상태(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권을 받게 되는 상황 등)
- 장애(지적 및 신체, HIV/AIDS, 암 및 유전적 특성 포함)
- 군 또는 퇴역 군인 상태

캘리포니아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보호됩니다.

- 임신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휴가를, 또는 출산과 관련된 부당한 위험으로 인해 실직하게 된 경우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받습니다(5인 초과 사업장).
- 출산, 또는 직원 본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및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돌봄을 위한 휴가를 보장받습니다(50인 초과 사업장).
- 성별, 인종, 기타 법에 따른 사유로 인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 DFEH에 신고할 경우 및 신고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는 상황, 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항의에 대한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 또한 장애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